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3일, 서삼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의원)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

원 등의 재할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납부고지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가. 유족에 대한 장례비 선지급 근거 마련 등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선원등의 직무상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에게 장례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 개정, 제3항·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장례비) ① (생략)	제28조(장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② ----- -----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현행	개정안
<신설>	<u>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u>

2) 검토의견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¹⁾를 살펴보면, 어선원 보험은 3톤 이상 선박은 당연가입으로 하여 어선원의 조업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등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 상병 등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장례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음.

□ 현행법은 어선원등이 ①직무상 사망하거나 ②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요 ☞ [참고자료] 참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장례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유족에 대하여 장례전에 발생하는 비용²⁾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이와 같은 선지급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직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하고 있어, 현행법 제28조제1항에서 장례비 지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②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선지급의 요건을 제1항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또는 개정안과 같이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시신 임시 보관비용(병원), 장례식장 계약금 등

나.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중앙회가 납부의무자에게 전자문서를 통해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 시 납부기한을 20일 이상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 ② (생략)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u>10일</u>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u><신설></u>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20일</u> ----- ----- ④ <u>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⑤ <u>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u>
<u><신설></u>	

현행	개정안
	<u>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u>

2) 검토의견

- 현행법³⁾은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알리고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앙회가 보험료 등 납부의 통지와 독촉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서면으로 진행되는 보험료 등 납부의 통지와 독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2억 4,000만원에 이르고 반송률은 최근 3년 평균 35.8%로⁴⁾ 재발송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납부의무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4) 수취인(선주)이 부재중이거나 주소를 변경하여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안에 따를 경우 서면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납부의무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보험료를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⁵⁾을 두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정태)

현재 직무상 사망뿐 아니라 직무외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비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족에 대한 선지급 규정도 직무상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함.

-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등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재 직무상 사망 뿐만 아니라 직무 외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비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족에 대한 장례비 선지급 규정도 직무상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례비를”을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8조(장례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28조(장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승선평균임금</u> <u>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장례비의</u>	제28조(장례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u>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u>
<신설>		

<u><신 설></u>	<u>일부를 미리 지급</u> <u>할 수 있다. 이 경</u> <u>우 장례비를 청구</u> <u>할 수 있는 유족의</u> <u>순위는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④ <u>제3항에 따라</u> <u>장례비를 지급한</u> <u>경우 제1항에 따른</u> <u>장례비는 제3항에</u> <u>따라 지급한 금액</u> <u>을 공제한 나머지</u> <u>금액으로 한다.</u>	<u>의 순위는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④ ----- <u>장례비의 일부를</u> <u>미리-----</u> <u>-----</u> <u>-----미리 지급한</u> <u>금액을 공제한 금</u> <u>액으로-----.</u>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어선에서”를 “그 어선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후단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비 지급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u>어선에서</u>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8조(장례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u>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u>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그 어</u> <u>선에서</u> ----- -----.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장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1항에 따른 장례비</u> <u>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u> <u>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u> <u>급한다.</u>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u> <u>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u> <u>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u> <u>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u>

<신 설>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 ② (생략)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0일-----
-----.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있으면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

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
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
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